

**2017년 에너지신산업펀드[e-신산업 초기기업/성장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에너지인프라 에너지신산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에너지신산업펀드")이 출자하는 하위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 항목 |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
|---------------|---|-----------------|
| 위탁운용 금 액 | · 총 500억원 이내 (운용사당 300억원 이내) | · 총 750억원 이내 |
| 선 정 운용사수 | · 2개사 이내 | · 2개사 이내 |
| 투자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p>*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p> | |
| 운 용 사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구」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p>※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p> | |
| 운 용 사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공고(공개모집) 이후 제안서를 접수하여 에너지신산업펀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홈페이지 : www.energyinfra.co.kr | |
| 접수일시 | · 2017년 3월 20일(월) 09:00~16:00 | |
| 심사결과 발 표 | · 2017년 4월중 | |
| 펀 드 결성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2. 출자분야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기간내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대상 | |
|--|--|
|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
| <p>□ 아래 분야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계획 사업이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국내기업(대기업 제외) 중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100% 투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MG, SG, SS ICT 등 신산업 분야 · 에너지신산업, 융복합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력분야) 등 관련 분야 · 전력신산업분야 (해외진출) 프로젝트 관련 분야 </div> <p>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또는 투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p> <p>②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경과 또는 투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내 투자</p> <p>③ 향후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참여 또는 프로젝트에 상용될 수 있는 기술/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내 투자</p> | <p>□ 아래 분야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계획 사업이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국내기업(대기업 제외) 중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100% 투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MG, SG, SS ICT 등 신산업 분야 · 에너지신산업, 융복합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력분야) 등 관련 분야 · 전력신산업분야 (해외진출) 프로젝트 관련 분야 </div> <p>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경과 또는 투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p> <p>②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또는 투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내 투자</p> <p>③ 향후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참여 또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내 투자</p> |

* 향후 투자기간 내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위탁운용사에게 별도 공지 예정

3. 주요 출자조건

| 항목 | 세부내용 |
|---------|---|
| 최소 결성금액 | · 제안금액 및 출자비율 감안하여 결정 |
| 출자비율 | · 약정총액의 85% 이내 |
| 운용사 | · 약정총액의 2% 이상 |
| 최소 출자비율 | <p>* LLC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경우 운용사 출자비율로 인정</p> <p>**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약정총액의 2% 이상</p> |

| | | |
|--------|---|---|
| 존속기간 | • 펀드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 • 펀드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 |
| 투자기간 | •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 납입방식 | • 수시납 또는 분할납 | |
| 관리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2년 이내 : 약정총액의 2% 이하 - 결성일로부터 2년 초과 ~ 4년 이내 : 투자집행금액의 2.4% 이하 + 미투자금액의 1.2% 이하 • 투자기간 이후(4년 초과) : 투자잔액의 2.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2년 이내 : 약정총액의 1.2% 이하 - 결성일로부터 2년 초과~4년 이내 : 투자집행금액의 1.5% 이하 + 미투자금액의 0.6% 이하 • 투자기간 이후(4년 초과) : 투자잔액의 1.2% 이하 |
| 성과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IRR 5%) 초과시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계단식 적용) - IRR 5% 초과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 IRR 10% 초과시, 초과이익의 30%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IRR 7%) 초과시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계단식 적용) - IRR 7% 초과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 IRR 10% 초과시, 초과이익의 30% 이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 분야 사업재편 및 진출기업의 M&A 지원, 기술확보 자금 지원 투자금액에 대해 추가성과보수 지급. 선정후 출자자 및 운용사간 협의 |
| 운용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 가능하여야 함 •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제외함 •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블라인드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각각 대표펀드매니저 1인과 핵심운용인력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
| 출자자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의 출자가 책임 운용 강화에 효과적일 것 | |

| | |
|------------------|--|
| |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과 협의하여 결정 |
| 수탁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회계감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ER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P시스템 사용 의무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협의하여 결정 |

4. 선정 우대 기준

- 펀드 결성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운용사를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운용사를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15%를 초과하여 출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 우대)
- 운용사(계열사 제외)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등 펀드 결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 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제안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시된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본 공고 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본 공고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서 결정한 펀드의 최소결성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서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결성총회가 지연되거나, 펀드가 관련법규에 따라 소관부처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인 경우
- 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 하위펀드에 참여하는 핵심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
- 기타 하위펀드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출자 제한하며, 공동 위탁운용사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다만,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
- 출자확약서 등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하위펀드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최종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운용사수 및 투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7.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현장 실사 → 2차 심사(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 일 자 | 내 용 | 비 고 |
|--------------|------------|-------------|
| 2017년 3월 20일 | 제안서 접수 마감 | 09:00~16:00 |
| 2017년 4월중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
| 2017년 7월중 | 펀드 결성 완료 | |

8.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방법

-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일시 : 2017년 3월 20일(월) 09:00~16:00

■ 출자 설명회

- 일시 : 2017년 3월 6일(월) 14:30~

※ 단, 출자 설명회 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장소 : 미래에셋대우빌딩 15층 대회의실(변경시 별도 공지)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16층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 운용본부

- 문의처 : 선옥상 차장 (Tel : 02-3775-9505, energyinfra.am@gmail.com)

홍성인 차장 (Tel. 02-3775-9506, energyinfra.am@gmail.com)

2017년 2월 28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